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사유

-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시행)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안 제1조, 제5조, 별표 1,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겸직신고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고흥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4항)
-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 의무화(안 제5조제6항)
- 지방의회의원 징계기준 신설(안 제7조)

3. 자치법규안: 별도 붙임

4. 예고기간: 2021. 12. 22.~12. 27.(5일간)

###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일반우편: (59542)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061-830-6065, FAX: 061-830-5595

- 붙임 1.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를 “제4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군과 공공단체에 대해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고흥군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제46조----- ----- ----- ----- ----- -----</p>
<p>제5조(검직신고) ①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lt;후단 신설&gt;</p>	<p>제5조(검직신고) ①----- ----- 제43조제3항----- ----- -----</p>
<p>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p>	<p>----- . 검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②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p>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의2(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신 설>

다른 허위 발견

2.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군과 공공단체에 대해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

< 징계기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li>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li> <li>○ 겸직 허위신고</li> <li>- 미신고, 허위신고</li> <li>○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li> </ul>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2. 영리거래 금지 (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거래금지 위반</li> <li>○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li>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li> <li>○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li> <li>- 미신고, 허위신고</li> <li>○ 계약체결 제한 위반</li> <li>○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li> </ul>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 지 방 의 회 의 원    겸    직 ( 변 경 ) 신 고 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선거구분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 직 내 용	기관· 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월	원 원	전 화 번 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의회의원

(인)

고흥군의회의회장 귀하

## 검 직 사 실 없 음 내 역 확 인 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 례 대 표		
	한 자		생 년 월 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의회의원

(인)

고흥군의회의회장 귀하

[붙임 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